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위중한 질병 등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연명의료를 유보(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한 환자가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에 2만 7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4가지 의료행위의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시행 8개월 차를 맞은 존엄사법의 현재 상황을 짚어보며 존엄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 앞으로 존엄사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임종문화 변하는 중” vs “환자가 직접 결정한 경우는 낮아”

이번 발표 이후 의료계에선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마지막을 맞이하려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무의미하게 목숨을 유지하기 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해 존엄하게 일생을 마치는 방향으로 임종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것. 죽음을 대하는 우리사회의 인식이 서구권과 달라 존엄사법 시행에 20년이 걸렸지만 막상 시행이 본격화 되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임종문화가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존엄사법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는 주장도 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 2만 742명 중 환자 자신의 병이 위중해진 뒤 직접 의료진과 상의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는 6836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그 밖에 전체의 66.3%를 차지하는 1만 3752명은 환자가 위중해진 뒤 환자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가족이 중단 의사를 밝

힌 경우였던 것. 환자가 직접 자신의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154명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했다.

국내의 한 의대 교수는 “2만여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99.3%의 환자는 환자가 위중해진 뒤에야 환자 혹은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존엄사가 자리 잡았다고 하기엔 아직 부족한 숫자”라며 “특히 전체의 3분의 2 가량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가족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아직 존엄사법이 가야 할 길은 멀었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인 5명 중 4명은 존엄사 찬성… ‘웰 다잉(Well Dying)’ 관심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존엄사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8개월 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 수에서 확인할 수 있듯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발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11월 노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참여한 노인의 83.1%가 존엄사를 찬성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5명 중 4명이 넘는 인원이 연명치료 대신 존엄사를 택할 것이라는 응답을 한 것. 인권위는 “무리한 연명치료로 의료비 등 가족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걸 원치 않는 노인들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존엄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 정서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환자에게 더 이상 치료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리였던 탓에 존엄사법 도입 때만 해도 실효를 거두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종 통계자료를 보면 ‘웰 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위한 가족 범위 축소, 인프라 마련 절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실효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떤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까? 웰 다잉(Well Dying)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가 위중한 상황일 때는 연명의료 중단에 가족 동의를 필요한데, 이 가족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가족 동의를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 전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동의를 필요하다. 고령 환자의 경우 손발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십수명의 가족 전원의 사인을 받아야 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현장에서 심심찮게 벌어진다는 것. 한 전문가는 “가족의 범위를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으로 간소화하거나 미국처럼 법정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할 때는 의료진의 역할이 중요한데,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현장 경험이 없거나 사전교육을 안 받은 의사도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존엄사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의료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또 다른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말기암 환자의 10%만이 호스피스 시설을 이용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50%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전국 요양병원의 99%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 기구인 병원윤리위원회가 없어 존엄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렵게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정리해 보자.
2. 인간의 생명에 대해 법의 강제력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토의해보자.
3. 나라별 장례문화의 특징을 찾아 비교해보고, 존엄사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설명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 ① 11-1. 법의 의미와 목적

사회 ① 8-2.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참고자료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 2016

지도법

학생들은 존엄사법을 통해 인간의 권리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의 가치충돌 문제를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하다보면 놓치는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안락사와 인간 존엄사 등으로 존엄사 대상을 달리해 토의를 진행하면 학생들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고, 가치문제가 진정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감적 이해가 동반돼야 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 혹은 가족이 존엄사의 대상이라면?’ ‘내가 의사라면?’ 등 다양한 역할과 입장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존엄사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각 나라의 존엄사 제도를 탐색해보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변화 등을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존엄사와 안락사의 차이를 짚어본 후 두 가지 모두를 허용한 나라의 제도 및 사회적 인식 등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존엄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심재희 충남 원이중 사회 교사